

○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② 장치비는 참가시 필요한 기본장치의 경우 인정 ③ 동일 전시회로 중앙정부, 지자체, KOTRA, 공공기관,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의 금전지원(일부 지원 포함)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④ 중앙정부, 지자체, KOTRA, 공공기관, 민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개별 전시회 신청 및 참가 후, 필수자료인 참가신청서, 결과보고, 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지원 불가 ⑤ 신청기업 외 타 명의(해외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, 해외파트너 등)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⑥ 대행기관(수행기관)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-대행기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 ⑦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⑧ 판촉전, 미술전, 패션쇼, 세미나, 포럼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(부스 임차가 없는) 경우 지원 불가

○ 제출 증빙 서류

전시회 참가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[필수] 참가신청서(홈페이지 내 작성) ② [필수] 신청사업 사용계획서(각서 포함) ③ [필수] 사업자등록증 / 공장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 ④ [필수]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 [필수]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[필수] 중소기업확인서 / 중견기업확인서
전시회 참가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전시회 부스임차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(해외전시회 신청서(application), 부스비(참가비) 인보이스) ② 송금증 등 납입증명(참가등록비, 부스임차료, 부스설치비, 추가장치비 인보이스, 은행 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, 송금증(원화 환율 기재, 카드매출전표)) ※ 송금 적용 활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송금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 내 '최초' 고시회차 매매기준을 캡처본 추가 제출 ③ 수출상담카드 ⇨ 충청북도 서식 사용하고, 반드시 사본 제출 ※ 전시회 참가성과 및 바이어 명함 등이 수출상담카드에 있어야 함 ④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 ※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하며, 부스 전면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, 해당 업체의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증빙 추가 제출 ⑤ 지원금 수취용 통장사본(대표자/법인 명의) ⑥ 출장자 전시회 출입증(Badge) 사본 ⑦ 수행기관 통한 참가등록 시 추가 증빙(전시주최-수행기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수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수행기관→전시주최측 송금증, 참여기업→수행기관측 송금증 등 납입증빙)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전시회 참가 후, 신청을 하는 기업은 상기 서류를 일괄 제출

○ 지원절차

- (기업체) 참가이전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(활용계획서)
- (기업체) 참가이후 : 참가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(증빙서류)
- (진흥원) 상/하반기 신청기업 증빙서류 검토 및 승인, 지원금 지급

○ 참가신청 접수 및 참여 선정

- 사업공고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공고 및 사전 신청 접수
 - ※ 전시회 참가이전 활용계획서만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
- 증빙서류 접수 : 2026. 1월 ~ 6월, 증빙서류 우편 접수(기업진흥원)
 - ※ **전시회 참가이후 증빙서류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우편 접수 후 선정**
 - ※ 우편주소 : (2839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판로지원팀 신속진 과장

○ 신청제외 대상
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
-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(본사·지점·공장)로 신청 및 선정 불가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
-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03. 13.(금) ~ 2026. 04. 03.(금)
- 신청방법 : 충청북도글로벌마케팅시스템(충북시책사업)(www.cbgms.chungbuk.go.kr)
온라인 참가 신청

신청문의

-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지원팀 신속진 과장(☎043-230-9742, eva4712@naver.com)